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19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8. 4. 17.

판결 선고 2018.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6. 1.접수 제141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4. 9. 7.부터 2016. 10. 5.까지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원고는 2015. 9. 7.경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정읍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고객인 C의 토지매매대금 37,594,486원으로 C의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 토지매매대금을 유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 C은 순정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독촉을 받자,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고에게 그 경위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2016. 5. 30. 대출담당자인 원고와 통화를 하였다.
 -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정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6. 1. 접수 제141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 사실을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인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또는 이와 선택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횡령 사실이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 알려지면 형사처벌 또는 퇴직을 당할 위험이 있어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매매대금 37,594,486원을 초과한 5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 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0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함철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정읍시 아파트 제208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정읍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208동 제6층 제603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면 적 48.866㎡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전라북도 정읍시 대 33,390.9㎡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3,390.9분의 23.99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00년 11월 25일 대지권

2. 말소될 근저당권의 표시

위 부동산 을구 순위 8번 2016. 6. 1. 접수 제14108호 근저당권설정 끝.